

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

의안 번호	3-1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03. 12. 2.

제 출 자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최근 남북간 정부 및 민간부문 교류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, 통일한국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 관문인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사업에 동참하여,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(안 제2조)
- 나. 파주시 주민(법인·단체 포함)의 문화·학술·체육·경제분야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기금 사용(안 제3조)
- 다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(안 제5조)
- 라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 설치(안 제8조)

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,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조성) ①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제3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파주시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의 문화·학술·체육·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

제4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.

②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
2. 결산보고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 (남북교류협력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
2.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시의회의원
-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
2.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 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실무기획단)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.

제9조 (회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산업국장
2. 기금출납원 : 교류협력담당

제10조 (보고등) ①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 ☎940-4166
입 안 자	기업지원과장	기 우 군
	교류협력담당	노 정 배
	담 당 자	김 지 숙

파주시 · 개성시 교류협력 추진

- 우리시는 통일한국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 관문으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

□ 추진방침

-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 추진
- 실질적 교류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
- 단계별 전략 수립하여 추진

□ 교류방법

-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인도적지원사업 추진으로 관심 제고
-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장치 마련 (조례제정, 위원회구성 및 기금조성 등)
- 상호 교류가능 사업 발굴 추진
 - 예) · 경의선 연결공사 현장 노동 · 식용품 지원
 - 파주 · 개성시간 축구 교환경기
- 점진적으로 교류분위기 및 공감대 형성으로 교류 정례화 추진

□ 세부추진계획

- '03. 12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
- '04. 6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
- '04. 12월 실무진 접촉 승인 및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

□ 문 제 점

-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
- 개성시 현지방문 및 직접 접촉이 어려움

□ 대 책

- 연차적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확보
- 경기도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원으로 참여 및 북한 공식기구 등을 통한 접촉

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최근 남북간 정부 및 민간부문 교류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, 통일한국 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 관문인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 사업에 동참하여,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(안 제2조)
- 나. 파주시 주민(법인·단체 포함)의 문화·학술·체육·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기금 사용(안 제3조)
- 다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(안 제5조)
- 라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 설치(안 제8조)

□ 검토의견

- 2000년 6.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

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, 남북교류협력의 성패여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, 북한의 동의여부,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.

- 우리시가 내실있는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, 안정적인 예산확보,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
- 또한,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조례제정, 기금 조성 등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.
- 통일의 관문인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 협력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금회 조례를 제정하여 교류협력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1년 11월 9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특히,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.
-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포함 17개 시·도 및 시·군이 있으며, 교류협력 추진중인 타 자치단체는 20여개 시·도로써 추진사례를 보면 주로 인도적 차원의 교류지원사업으로 농기계(경운기), 배, 미역, 밀가루, 비닐,

자전거, 감귤, 당근 등이며, 강원도에서는 금강-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, 연어치어 방류 및 소규모 부화장 건설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사례가 있습니다.

- 북한은 민간차원의 교류는 희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전면에서 교류하는 것은 꺼리는 입장이나 경제문제는 교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유연하게 대응이 요구되어 우리시도 경의선 연결공사,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추진, 남북간 실무회담 등을 통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시와 대치한 개성시간 자매결연 및 경기도의 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우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은 2004년 1억원을 확보하고 매년 2억원씩 확대하여 향후 10년후에 기금목표액을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, 교류협력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.
- 참고로 지난 12월 15일 경기도 공무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은 2박3일간 금강산에 머물며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, 민족화합협의회 등 북측관계자들과 중점 교류분야 및 대상지역 등을 논의한바 있으며,
- 또한, 최근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방북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와 광주·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지역경제인들의 북한진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협의회는 향후 개성공단 개발 등 대북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- 그리고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.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인 올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,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으며, 남북 노동자대회와 교직원 모임, 국호 영문표기 남북토론회, 평양노래자랑, 대구유니버시아드, 동·서해선 철도·도로연결 착공식, 개성공단 착공식 등을 올해의 남북교류 성과로 자체 평가하는 등 북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